

제30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
[2024. 1. 31.(수) 1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 3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년 1월 31일

전문위원 장 석 현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4 - 14
- 나. 발 의 자: 정정희 의원 외 8명
- 다. 발의일자: 2024년 1월 22일
- 라. 회부일자: 2024년 1월 22일

2. 제정이유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목적으로 성차별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성평등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 나. 성인지 예산제 관련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다. 중점관리사업 선정·관리(안 제4조)
- 라.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증진을 위한 지침(안 제5조)
- 마. 성인지예산사업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 제7조)
- 바. 교육과정 운영 및 주민참여·지원(안 제8조 ~ 제9조)
- 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위탁(안 제1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지방회계법」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2조(성별영향평가)
- 나. 협조부서: 기획예산과
- 다. 입법예고(2024. 1. 22. ~ 2024. 1. 27.)

5.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안 제1조는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함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는 예산의 책정·배분의 과정을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양성에게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4.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서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입장과 경험을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찰력·기술·지식 등을 말한다.

○ **안 제3조**는 양성평등의 목표, 대상사업의 선정 등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역할을 규정함

○ **안 제4조**는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정·관리하는 중점관리사업을 명시함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2조 성별영향평가에 따라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2. 사업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사업 등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업
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안 제5조**는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년 해당 지침이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 하도록 규정함

○ **안 제6조 ~ 제7조**는 성인지예산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중점 관리 사업, 연구 분석 및 권고, 제도 및 정책 발굴 등에 대해 심의·조정, 자문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 **안 제8조 ~ 제9조**는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증진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과정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함

○ **안 제10조**는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조사·연구·평가 등의 업무를 민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음

다.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목적으로 성차별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을 통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 2024년 강서구 성인지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24% 증가한 548억 7,400만원이며, 304억 5,600만원 증액된 수준임
- 성인지 예산제도¹⁾ 도입 이후로 해당 예산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대상사업 선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지표 설정의 현실성 등 운영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본 조례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제도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중점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는 물론, 실무에 도움이 되는 지침과 교육 운영 등의 방안을 규정하여 사업부서의 이해도를 향상함과 동시에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확립에 기여하는 조례 제정으로 판단됨
- 다만, 성인지 예산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및 양성평등 사업을 추진하는 가족정책과, 결산을 총괄하는 재무과 등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과 지침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 성인지 예산 제도(Gender Responsive Budgeting)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등 성평등한 자원 배분의 과정을 도모하는 것

□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32조(성별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할 때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평가의 시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